

## 1. 제정이유

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전자정부법」이 개정(법률 제18207호, 2021. 6. 8. 공포, 12. 9. 시행)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(제3자 범위 구체화) 법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·공공기관 및 은행,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 등 외에 의료·통신 분야 민간 이용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 추가
- 나. (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) 본인정보 제공요구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관련 근거 마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특이사항 없음

##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전자정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)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
3.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

제3조(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,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2조제3호에 따른 제3자 지정에 관한 사항
2. 영 제51조의2제8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영 제51조의2제10항에 따른 「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」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 후부터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로 본다.